

등록번호	개발계획처-1023
등록일자	2026.02.26.
결재일자	2026.03.03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청년인턴	팀장	처장	부사장 직무대행	
지상훈	류만재	박진우	03/03 박진우	

2026년 1분기 및 해빙기 대비 인천항 항만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행계획(안)

< 요약 보고 >

- ☐ 시행목적 : 해빙기 안전취약시기 대비 항만시설물·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을 통한 시설물 파손 및 인명사고 선제적 예방 도모
- ☐ 대상시설 : 총 100개소
 - 정기안전점검 : 77개소 (제1·2종 시설물 20개소, 기타시설물 57개소)
 - 특별안전점검(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합동점검) : 하버크레인 23기
- ☐ 점검기간 : 2026. 3. 3.(화) ~ 2026. 3. 27.(금) (25일간)
- ☐ 점검방법 : 자체 점검반·민간전문가 편성을 통한 합동 점검
 - ※ 건설부문 부사장 합동 점검 예정



건 설 본 부
개 발 계 획 처

2026년 1분기 및 해빙기 대비 인천항 항만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행계획(안)

1. 목적 및 배경

- ☐ 해빙기에 따른 지반 악화 및 시설물 변형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필요성 증대
- ☐ 정기/특별안전점검을 통한, 소관 시설물 안전성 확보와 중대재해 예방 도모
- ☐ 관련 법* 상 시설물 관리주체의 점검 의무를 정상 이행코자 함
 - * 관련 법 : 「시설물안전법」 제6조(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·시행)
「항만법」 제38조(항만시설의 안전점검), 영 제41조(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)

2.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추진 사항

- ☐ '26. 1. : 설 명절 대비 인천항 항만시설물* 특별안전점검 시행
 - * 대상시설 : 다중 이용시설 6개소 및 연안여객터미널, 부잔교 시설 CEO 합동안전점검 추가 실시
- ☐ '26. 1. : 2026년 인천항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
 - ※ 관련문서 : 2026년 인천항 항만시설물 건설현장 및 안전점검 계획(안) 제출(개발계획처-425, '26.01.23)
- ☐ '26. 2. : 설 명절 대비 인천항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(IPA→해양수산부)
 - ※ 관련문서 : 2026년 설 명절대비 항만시설 안전점검 결과 제출(개발계획처-685, '26.02.06)
- ☐ '26. 2. :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시행 요청 알림(해양수산부→IPA)
 - ※ 관련문서 : 2026년 해빙기 취약 항만시설 안전점검 계획 알림(항만기술안전과-873, '26.02.10)

3. 안전점검 대상시설

□ 정기안전점검 : 77개소(상세시설 현황 불임2 참고)

(단위 : 개소)

구 분	총 점검 대상시설	분기별 점검 대상시설				비 고
		1분기*	2분기	3분기	4분기	
갑 문	1	1	1	1	1	갑문관리실 별도시행
계류시설	22	20	2	20	2	
여객터미널	5	3	5	3	5	
물 양 장	5	4	1	4	1	
호 안	9	4	5	4	5	
창 고	25	25	25	25	25	
부 잔 교	9	4	5	4	5	
하역장비	7	0	7	0	7	
전력시설	12	12	12	12	12	
탐 승 교	4	4	4	4	4	
교 량	1	0	1	0	1	
가설건축물	1	0	1	0	1	
합 계	101	77	69	77	69	

* 해양수산부 지정 해빙기 취약 항만시설 47개소 포함(불임1,2 참고)

□ 특별안전점검(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합동점검) : 하버크레인 23기

운영사 / 크레인대수	제작연도 / 사용연수	점검 주기*	전체 대수	분기별 점검 대상시설			
			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ET컨테이너터미널/2기	2009년/18년	연2회	2	2		2	
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/7기	2015년/12년	연1회	5	5			
	2001년/26년	연2회	2	2		2	
인천컨테이너터미널/5기	2004년/23년	연2회	2	2		2	
	2005년/22년	연2회	1	1		1	
	2008년/19년	연2회	2	2		2	
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/7기	2016년/11년	연1회	5	5			
	2017년/10년	연1회	2	2			
인천남항부두운영(주)/2기	1989년/38년	연2회	2	2		2	
합 계			23	23	0	11	0

* 점검주기(사용연수 기준) : 15년 이상시 연 2회, 15년 미만시 연 1회

4. 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 계획

□ 현재 우리공사에서 추진중인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활동의 대부분이 이전 점검결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활동에 불과함

※ 점검의 양적 활동은 증가(점검횟수, 지적사항 증가) 되었으나, 질적 수준의 향상은 미미함

□ 기존 정밀안전점검 데이터를 정기점검 활동에 반영함으로써, 시설물 결함 이력을 정밀하게 추적 및 데이터 연속성 확보 도모

□ 정기안전점검 개선 방안

구 분	현 행	개 선
사전자료 분석	· 안전점검 결과 검토 후 연속성 있는 점검 수행 - 검토대상 : 전차 정기안전점검	· 안전점검 결과 검토 후 연속성 있는 점검 수행 - 검토대상 : 전차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·진단 및 보수보강이력
시설물 외관조사	· 육안조사를 통한 시설물 전반의 외관상태 점검	· 육안조사를 통한 구조물 별 시설물 외관상태 점검 ·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중 “부채별 중점 유지 관리방안” 연계를 통한 정밀 분석 ※ 필요시 드론, 스타프, 레벨측정기 등 점검장비 사용을 통해 시설물 상태 정밀확인
결과보고	· 점검결과 시설물의 상태 평가 · 시설물 유지관리 필요사항 등 명시	· 점검결과 시설물 상태 평가, · 시설물 유지관리 필요사항 명시 ·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적의 관리방안 계획 ※ 필요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및 자문

□ (기대효과) 기존 데이터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결함이력 관리의 정밀도 제고 및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시설물 유지 관리 체계 구축

5. 안전점검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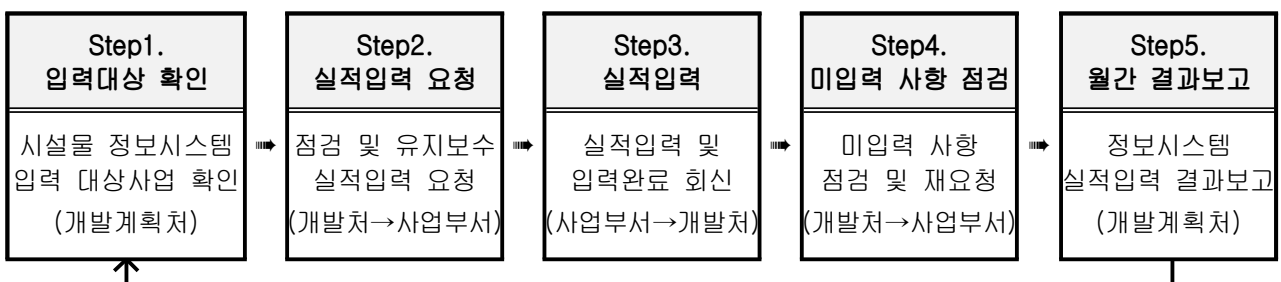
구 분	정기안전점검(77개소)	특별안전점검(23개소)
점검기간	2026. 3. 3. (화) ~ 3. 27. (금) ※ 하버크레인 특별안전점검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	
점검사항	· 기존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연속성 확보 - 주요 결함 부위의 손상 진전 모니터링 - 이력을 바탕으로 신규 손상 선제적 포착 · 해빙기 취약시설 유해위험요소	· 정기검사 시행 및 지적사항 조치 · 구동부 누유, 이상소음, 발열 등 · 강풍 등 비상상황 대비 현황 · 고박장치, 소화기 등 안전관리 실태
점검방법	· 인천항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을 참고한 자료 분석 ·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표(국토안전관리원)에 의한 육안점검(붙임3 참고) · 점검과정에서 필요시 사진촬영 및 실측(레벨, 거리측정기 등 활용) · ‘무인항공촬영장비(드론)’ 활용을 통한 사각지대 점검 · 점검 중 발견된 위험요소 즉시 안전조치	
점검반원	(점검반장) 개발계획처장 내부(5) : 건설안전관리팀장 총괄 토 목 건 축** 기 계 전 기 건설안전관리팀장, 청년인턴 지상훈 과장 손창무 대리 김형준 대리 김준성 외부(2)* 토 목 건 축 용역 체결 완료 후 점검반 확정 예정 * 「건설현장 및 항만시설물 재해예방 안전점검 컨설팅 용역」 수행사 지원 ** 여객터미널 점검 시, 운영부서 담당자 및 시설물 운영사 임직원과 합동 점검 시행	
임원 합동점검	· (설 명절 대비) : CEO 합동 점검 · (1분기 및 해빙기) : 건설부문 부사장 합동 점검 · (2분기 및 우기) : 건설부문 부사장 합동 점검 · (3분기 및 추석 명절 대비) : CEO 합동 점검 · (4분기 및 동절기) : 건설부문 부사장 합동 점검 ※ 상기 계획은 특별안전점검 추가 실시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	

6. 시설물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방안 <등급제 지적사항>

□ 시설물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(FMS)

구 분	내 용
안 전 점 검 실 적 (월간)	1. 모니터링 사항 · 연간 안전점검계획(안) FMS 업로드 → 매년 2월15일까지 · 안전점검 실적 FMS 업로드 → 안전점검 종료 30일 이내 2. 안전점검 종류 ·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- 정기안전점검, 긴급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, 성능평가 3. 모니터링 방법 · 익월 FMS 업로드 사항 사전 확인 후, 기한 내 조치 가능하도록 담당자 사전 협조 요청 → step1. FMS 업로드 필요사항 사전확인 → step2. 담당자 업로드 조치 요청 → step3. 안전점검 실적 입력 → step4. 안전점검 실적 입력 여부 확인
유 지 관 리 실 적 (월간)	1. 모니터링 사항 ·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 FMS 업로드 → 준공 45일 이내 · 입력자료 : 공사일반사항, 설계도면, 내역서, 보수부위, 보수·보강 내용 등 2. 입력 대상시설 ·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1·2·3종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 준공 시 3. 모니터링 방법 · 익월 FMS 업로드 사항 사전 확인 후, 기한 내 조치 가능하도록 담당자 사전 협조 요청 → step1. FMS 업로드 필요사항 사전확인 → step2. 담당자 업로드 조치 요청 → step3. 유지보수 실적 입력 → step4. 유지보수 실적 입력 여부 확인
결 과	·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실적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제고 · 시설물 유지관리정보 입력 기한 준수를 통한 공공기관 시설물 관리의무 강화

□ 모니터링 세부 절차



7. 향후 추진계획

□ 점검결과 조치

구 분	조치 계획
중대한 결함* 등 시급한 보수보강	- 긴급보수 또는 추가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 추진
시급을 요하지 않는	- 유지관찰 또는 장래 유지보수 계획 반영
운영 중 임대시설 파손	- 자체 보수토록 통보

*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장제2절에 따른 조치 : 사용제한, 안내 표지판 설치 → 중앙행정기관장, 지방자치단체장 통보 → 보수·보강 → FMS 입력

□ 향후 추진일정

- '26.03. : 1분기 및 해빙기 대비 정기안전점검 시행
- '26.04. : 점검결과 보고
- '26.04. :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요청 및 FMS 입력

- 붙임 1. 관련문서 1식.
2. 안전점검 대상시설 현황 1부.
3. 시설물 점검표 1부. 끝.